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세무1과)

의안번호	제 219 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2023. 11. 7.)
의 안 명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령에 규정된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
- 나.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출연금 지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16,025천원
 -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각종 지방세 세제개편 등의 기초연구자료를 제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편성

4. 검토의견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따라 미리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6 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동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는 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낭비를 방지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 28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²⁾에 따라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으로, 서울 서초구

-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에 이사회, 원장, 부원장, 5실 1사업단, 2센터로, 지방세 연구사업과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³⁾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1호⁴⁾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며, 2024년 우리구 출연금은 1,602.5만원으로,

-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3)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